



미국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 텍사스주 형사절차법(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을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

I. 머리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노역장 유치를 시키는 현행 『형법』상의 규정이,¹⁾ 벌금을 납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무능력 등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우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제적 무능

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법원으로부터 일정액 이하²⁾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1) 이와 관련한 『형법』상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69조(벌금과 과료)

-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2) 이는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빠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의 사회봉사 신청을 배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의 상한을 300만 원 이하로 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09년 3월 4일자 주요 언론 보도 참조.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징역 또는 금고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거나 다른 사건으로 이미 형의 집행을 받고 있어 구금 중인 사람의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봉사신청을 받은 검사는 벌금 미납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사회봉사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검사가 사회봉사신청을 기각한 경우 벌금 미납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사회봉사불허나 취소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최대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납부해야 할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기간을 산정한다. 이러한 사회봉사가 강제노역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법은 사회봉사 집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사회봉사 이행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낸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경우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미납벌금을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미납벌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되게 된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상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노역장 유치에 따른 단기자유형의 폐해로 꼽히

는 범죄 학습, 범죄자 낙인, 가족관계 단절, 구금 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벌금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과연 성실한 사회봉사의 수행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바, 이하에서는 미국 텍사스 주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나마 사회봉사명령제도를 개관해보고, 텍사스 주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 본 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사회봉사(communitary service) 명령 제도 개관

사회봉사명령(communitary service order)은 1972년 영국의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 의하여 최초로 창안되어, 오늘날 다른 국가들의 입법적 모델이 된 바 있고, 그 후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개

념은 아직까지 통일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마다 형벌의 체계, 행정 실무 및 사회적·문화적 여건이 다르고 운영실태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어 자유형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자에 대하여 자유형을 대신하여 일정 기간 무보수로 작업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처벌로서의 성격과 배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킴으로써 범죄자와 사회와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여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수월하게 하려는 것이 사회봉사명령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① 대상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강제노역을 통하여 범죄인을 처벌하는 처벌적 기능, ②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회에 대하여 노동을 통하여 배상하는 배상적 기능, ③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속죄적 기능, ④ 근로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와 재통합

할 기회를 주는 사회복귀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단기구금형의 대체형, 벌금미납자에 대한 대체처분, 사면 혹은 기소유예의 조건의 형태로서 기소·공판·양형·행형단계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⁴⁾

그렇지만 구금형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계 각국의 추세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사회봉사제도는 다른 중간적 처우(intermediate sanction)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적은 것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즉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단기 구금될 것이 적합한 자들에 대한 중간수준 정도의 처벌로서 활용되기 보다는 보호관찰(Probation)의 준수사항 내지는 도로교통법위반자 등의 사소한 범죄인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⁵⁾

Ⅲ. 텍사스 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 있듯이, 미국 내에서의 사회봉사명령은 구금형의 대안으로서뿐만 아니라 보호관찰(probation)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벌금미납자에 대



- 3) 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환·오영근·조준현·최병각,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1), 25-67쪽 이하 참조.
- 4)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규원·정현미·진수명·박철현,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에 관한 연구』(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9), 56-62쪽을 참고.
- 5) 유석원, “미국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70호(2002.12), 221쪽. 반면, 강지원, “외국의 성인보호관찰제도 개관”, 법무부 보호국 편,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연구』(과천: 법무부, 1993), 18쪽은 사회봉사명령이 “보호관찰 조건의 새로운 형태 중 대표적인 예로서 최근 각주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찰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텍사스 주의 보호관찰제도

텍사스 주의 형사절차 역시 영·미법계의 형사절차로서, 기소(charge) 이후 유죄협상(plea bargaining), 증거조사, 유죄인정(finding) 절차, 그리고 양형(assessment punishment)과 형의 선고(imposition of punishment)가 이루어지면 형을 집행(execution punishment)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⁶⁾ 이러한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업무는 크게 심리전업무(pretrial service)와 보호관찰업무(probation)로 대별될 수 있다.

텍사스 주의 보호관찰처분은 크게 일반보호관찰(regular community supervision),⁷⁾ 유죄인정 유예 보호관찰(deferred adjudication),⁸⁾ 충격 보호관찰(shock community supervision),⁹⁾ 주 유치장 중범 보호관찰(State Jail Felony C/S),¹⁰⁾ 심리전감독(Pretrial Intervention)¹¹⁾의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주요한 보호

관찰프로그램으로는 특별관리 보호관찰(special probation case), 집중감독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주간보고센터(Day Reporting Center),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모델,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의 수용치료 모델, 가택구금과 전자감시, 가석방자를 위한 보호관찰프로그램,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이 있다.¹²⁾

한편 보호관찰업무의 주체가 행정부여야 하는가 아니면 사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은데, 미연방차원의 보호관찰조직은 연방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보호관찰실에서 맡고 있지만, 주의 경우에는 행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도 없지 않다. 텍사스 주의 경우는 주행정부의 '텍사스 형사사법국(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이하 TDCJ)'¹³⁾ 산하의 '사회내 사법지원부(Community Justice Assistance Division; 이하 CJAD)'¹⁴⁾가 보호관찰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현재 텍사스 주 내에 254개의 '사회내감시·교정지부(Community



6) 이형재, "미국 보호관찰제도 연구 -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보호』, 통권 제16호(2004.12), 78쪽.

7) TCCP art. 42.12, §3,3g,4.

8) TCCP art. 42.12, §5.

9) TCCP art. 42.12, §6,7,8.

10) TCCP art. 42.12, §15.

11) TCCP art. 42.12, §11.

12)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이형재, 위의 논문, 79~81쪽, 82~94쪽을 참고.

13) 텍사스 형사사법국 홈페이지: <http://www.tdcj.state.tx.us>.

14) 텍사스 형사사법국의 지역사법 지원부: <http://www.tdcj.state.tx.us/cjad/cjad-home.htm>.

Supervision and Corrections Department; 이하 CSCD)를 두고 있다.

2. 텍사스 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텍사스 주 형사절차법상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1) 구금형의 대체형으로서 (2) 배상(restitution) 방법의 하나로서 (3) 보호관찰(Probation) 또는 사회내감독(community supervision)의 결부된 조건(condition)으로서, 그리고 (4) 벌금미납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서 앞의 세 가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벌금의 대체형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구금(confinement)의 대체형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은 텍사스 주 형사절차법 제42.036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음주관련범(텍사스 주 형법 제49.04~49.08조)을 제외한 피고인들에게 구금형(sentence of confinement)의 전부 혹은 일부, 또는 사회내감시의 조건으로서 부과된 구금기간(period of confinement required as a condition of community supervision)의 전부 혹은 일부의 기간에 대해서, 주 유치장(county jail)에의 구금 대신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는데, 다만 구금형이 배심원

에 의해 부과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¹⁵⁾ 이 때의 사회봉사명령에는 피고인의 사회봉사 시간 및 봉사 장소가 법원에 의해 특정되어야만 한다.¹⁶⁾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 공중에 대한 봉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나 정부조직에서만 일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단체나 정부조직은 피고인의 봉사업무수행을 감독하고 CSCD 등에 보고해야 한다.¹⁷⁾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의 성실한 사회봉사를 담보하기 위한 보석금(bail)을 명령할 수 있고, 그 보석금에 적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¹⁸⁾ 한편 이 조항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법원은 직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1주일에 16시간을 넘는 사회봉사를 명령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추가적인 사회봉사시간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피부양자들을 곤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피고인이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당 32시간을 넘는 사회봉사를 명해서는 안되지만, 그 외의 시간을 직장을 구하기 위해 활용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다.¹⁹⁾ 피고인은 사회봉사 8시간당 유치장 구금 1일을 탕감받게 된다.²⁰⁾

두번째의 배상수단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15) TCCP art. 42.036(a).

16) TCCP art. 42.036(b).

17) TCCP art. 42.036(c).

18) TCCP art. 42.036(d).

19) TCCP art. 42.036(e).



예로서 텍사스 주 형사절차법 제42.037조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restitution)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때 재정적으로 손해배상이 곤란한 미성년자에게는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²¹⁾ 한편 낙서(graffiti)로 인해 처벌된 피고인(텍사스 주 형법 제28.08조 위반)이 재정적으로 배상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²⁾

세번째 경우인 사회내감독(community supervision)에 결부된 조건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은 텍사스 주 형사절차법 제42.12조 제16항이 규정하고 있다.²³⁾ 이에 의하면 판사는 사회내감독의 조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프로젝트(community service project)나 판사에 의해 승인되거나 혹은 당국이 지정한 기관(들)의 사업에서 특정된 시간 동안 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에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있거나,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피부양인들에게 곤궁을 초래하게 되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내감

독 명령에 명기한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려서는 안된다.²⁴⁾

이 경우 사회봉사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1급 중죄(a first degree felony)로 분류된 범죄에 대해서는 1,000시간 이내, 2급 중죄의 경우는 800시간 이내, 3급 중죄의 경우는 600시간 이내, 주 유치소 범죄(a state jail felony)의 경우는 40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²⁵⁾ 한편 판사는 피고인에게 특정된 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행하는 대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비영리 구호시설(a nonprofit food bank or food pantry)에 특정한 기부를 행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²⁶⁾

3.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텍사스 주 법원(County-level court 이상의 법원들)²⁷⁾은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벌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탕감해 줄 수 있다.²⁸⁾ 이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봉사의 시간과 CSCD 혹은 법원 관련 공무원이 사회봉사 프로그램에의 피고인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 책무를 수행해



20) TCCP art. 42.036(f).

21) TCCP art. 42.037(p)(2).

22) TCCP art. 42.037(s)(2).

23) TCCP art. 42.12, §16.

24) TCCP art. 42.12, §16a.

25) TCCP art. 42.12, §16b.

26) TCCP art. 42.12, §16f.

27) 텍사스주의 법원체계에 관해서는 <http://www.courts.state.tx.us/>를 참조.

28) TCCP art. 43.09(f).

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²⁹⁾

구금형의 대체형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처럼 이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 공중에 대한 봉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조직에서만 일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단체나 정부조직은 피고인의 봉사업무수행을 감독하고 CSCD 등에 보고해야 하며,³⁰⁾ 이와 함께 법원은 피고인의 성실한 사회봉사를 담보하기 위한 보석금(bail)을 명령할 수 있고, 그 보석금에 적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³¹⁾ 한편 이 조항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법원은 1주일에 16시간을 넘는 사회봉사를 명령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추가적인 사회봉사시간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피부양자들을 곤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³²⁾ 이 조항에 따른 피고인의 벌금 탕감액은 사회봉사 8시간당 100달러이다.³³⁾

한편 이러한 벌금미납자에 대한 규정은 텍사스 주 내의 하급법원인 치안재판소(justice court)나 자치법원(municipal court)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³⁴⁾ 치안재판소나 자치법원에 관한 규정³⁵⁾에도 역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금형³⁶⁾과 함께, 벌금의 충족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이 규정되어 있다.³⁷⁾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치안판사나 자치법원판사(justice or judge; 이하 ‘치안판사 등’)는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법원에 의해 벌금을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피고인에게 벌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회봉사를 수행함으로써 탕감받도록 명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부과된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언제든지 사회봉사 책무를 면할 수 있다.³⁸⁾ 사회봉사를 명하는 치안판사 등의 명령에는 피고인이 수행해야 할 사회봉사 시간이 특정되어야만 한다.³⁹⁾ 이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이



29) TCCP art. 43.09(g).

30) TCCP art. 43.09(h).

31) TCCP art. 43.09(i).

32) TCCP art. 43.09(j). 다만 이 경우에는 구금형의 대체형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과는 달리 직장의 유무와 관련한 취업상의 차이에 관한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로 인해 실제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33) TCCP art. 43.09(k).

34) TCCP art. 43.09(n). 치안재판소(justice court)는 1만 달러 이하의 민사사건이나, 벌금에 의한 처벌만이 가능한 경범죄 등을 다루고, 자치법원(municipal court) 역시 벌금에 의한 처벌만이 가능한 경범죄 및 자치조례 위반 사건 등을 다룬다.

35) TCCP art. 45.

36) TCCP art. 45.046, 45.048.

37) TCCP art. 45.049.

38) TCCP art. 45.049(a).

39) TCCP art. 45.049(b).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 공중에 대한 봉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나 정부조직에서만 일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단체나 정부조직은 피고인의 봉사업무수행을 감독하고 치안판사 등에 보고해야 하며,⁴⁰⁾ 사회봉사 시간 역시 기본적으로 주당 16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⁴¹⁾ 피고인은 사회봉사 8시간당 적어도 50달러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게 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텍사스 주의 형사절차법을 중심으로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는 절차 및 집행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텍사스 주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주요한 측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벌금의 징수권자는 벌금을 부과한 관청 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텍사스 주 행정부의 TDCJ의 CJAD 산하의 CSCD의 감독하에 - CSCD에는 CJAD의 교육을 이수한 사회봉사감독관(community service offi-

cer)들이 활동한다.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가 실행되는 기관, 즉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 공중에 대한 봉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나 정부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②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치안재판소 등의 하급법원 포함)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봉사의 시간은 물론 수행할 사회봉사 프로그램⁴²⁾까지 법원이 지정한다.
- ③ 텍사스 주 형사절차법상으로는 사회봉사의 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해되기 쉽지만, 당사자(검사 혹은 피고인)의 신청을 배제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심리전업무(pretrial services)의 일환인 심리전조사(pretrial investigation) 작업에 의해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법원에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회봉사 결정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법원이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를 명령하기 위한 요건이 경제적 무능력자에 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금미납자에게



40) TCCP art. 45.049(c). 다만 사회봉사명령 이행에 대한 보고를 CSCD가 아닌 치안판사 등에 보고하는 것이 다른 경우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41) TCCP art. 45.049(d).

42) Lemon v. State, 861 S.W.2d 249 (Tex.Cr.App.1993). Ortega v. State, 860 S.W.2d 561 (Tex.App.--Austin 1993, no pet.).



는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은 한도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벌금액의 전부까지 가능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 ⑥ 사회봉사에 의한 벌금 탕감액은 사회봉사 8시간당 100달러(일반법원) 혹은 최소 50달러 이상(하급법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1주당 사회봉사시간은 1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관장 속에 집행되는 체제로,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텍사스 주 형사절차법상, 벌금미납자에 대한 처분이 사회봉사명령제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벌금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은 우선적으로 대체노역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거나, 대체노역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금됨으로써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⁴³⁾ 한편 TD-CJ의 CJAD에 의해 승인된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보유한 CSCD의 지원을 받는 법원의 경우에는 벌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벌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탕감해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의 탕감액도 구금의 경우와 같다.⁴⁴⁾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매우 곤궁(indigent)하거나, 벌금미납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의 납부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⁴⁵⁾ 이러한 다양한 조처들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청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법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 주 영

(외국법제조사위원, 서울대 BK21 박사후과정연구원)



43) TCCP art. 43.09(a).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상의 노역장 유치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의 탕감액은 구금 1일당 50달러, 대체노역 1일당 50달러이며, 구금형으로 복역 중에 대체노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금형의 복역과 벌금의 탕감이 동시에 진행된다.

44) TCCP art. 43.09(e).

45) TCCP art.43.091.